

의안번호	2217132
의 퇴 인	손명수의원
회 답 일	2026.3.23.
추 계 번호	26B1049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0조의2제4항 신설 (건설기술인단체의 공제사업)	제1항1)에 따른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되,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 1. 가입자의 부담금 2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.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. 그 밖의 수익금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70조의2제4항 신설 (건설기술인단체의 공제사업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제70조의2(건설기술인단체의 공제사업)

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단체(이하 “건설기술인단체”라 한다)는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
2. 가입자의 복지·후생을 위한 사업
3. 가입자의 교육·기술인증·경력개발 등 역량개발 사업
4.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,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술인단체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,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방법과 지원규모, 지원시기가 불확정적이고, 공제사업의 가입자 규모, 공제료 수준, 급여 구조 등 공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후 확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, 이를 위한 재정 지원 수요를 현 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다만,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관련 유사 공제사업(건설공제조합, 전문건설공제조합,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,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, 건축사공제조합 등)의 경우 조합원 출자금 또는 가입자 공제금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([참고자료])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국토교통부 소관 공제사업 재원현황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구 분	기관명	근거 법령	재원 (자본금) 근거	정부 지원여부
1	건설공제조합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54조	조합원 출자금	부
2	전문건설공제조합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54조	조합원 출자금	부
3	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54조	조합원 출자금	부
4	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	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74조	조합원 출자금	부
5	건축사공제조합	「건축사법」 제38조의3	조합원 출자금	부
6	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공제조합 (전국버스공제조합)	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60조 및 제61조	조합원 분담금	부
7	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공제조합 (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)	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61조	조합원 분담금	부
8	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회공제조합 (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)	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60조	조합원 분담금	부
9	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공제조합 (전국택시공제조합)	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60조	조합원 분담금	부
10	전국렌터카공제조합	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61조	조합원 분담금	부
11	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(전국화물차공제조합)	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1조	조합원 분담금	부
12	배달서비스공제조합	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41조	조합원 분담금	부
13	한국공인중개사협회	「공인중개사법」 제42조	가입자 공제금	부
14	대한주택관리사협회	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2조	가입자 공제금	부
15	한국감정평가사협회	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	가입자 공제금	부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